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폐지 및 관련 규정 삭제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7054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부
2. 발의연월일 : 2024. 12. 30.
3. 회부연월일 : 2024. 12. 3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성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등에 따라 시행 중인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삭제 등).

현행	개정안
<u>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u> <u>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u>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u>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u>	<u><삭 제></u>

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
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제4항
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
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
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교
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2
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
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

<삭 제>

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
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의 취소) 교육부장관
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
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

<삭 제>

<삭 제>

<u>증표시를 한 자</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	
---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우수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국가가 평가·인증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인성교육의 활성화 및 인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현재 인증 업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와 인증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대상 프로그램을 심사·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편, 2022년 12월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폐지가 결정되었는데, 해외 사례가 없고 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자율성 강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그에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기술규제위원회에서도 유사한 해외사례가 없다는 점, 인증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참고로,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의 수는 다음과 같이 최근 5년간 평균 4.6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됨.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현황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최근5년간 평균
신규	43	15	7	1	2	2	8	4	4	1	6	4.60

자료: 교육부

동 제도에 따른 인증 실적이 저조한 점, 인증 없이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 인증이 이루어지더라도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외에 주어지는 실효성 있는 혜택이 전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개혁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남겨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인증제의 본래 취지가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폐지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6